

교직원 보수규정

2002. 02. 22. 부분개정 2011. 03. 01. 부분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05. 06. 01. 부분개정

2006. 01. 17 부분개정

2009. 04. 01 부분개정

2009. 12. 01. 부분개정

2010. 05. 04. 부분개정

2010. 10. 05.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에 의거 대전보건대학에 소속된 교직원 (이하 임시직, 시간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직원을 말한다)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대전보건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이하 법 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수라 함은 본봉과 각종 제수당을 말하며 본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며, 수당 및 후생적 급여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다만 동 규정에서 열 거한 급여 중 제39조에서 연봉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총액을 연봉 이라 하며 연봉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 1년간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해당 직급과 직책 및 개인의 누적한 성적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3. “성과급 연봉”이라 함은 전년도 업무실적 등 교원 및 직원 업적평정규칙에 의하여 반영되는 성과급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 중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호봉획정과 정기승급

제4조(시행권자) 초임호봉을 제외한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정정은 총장이 시행하며 시행결과를 감독기관(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1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초임호봉 획정)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하여[별표1]에 의해 경력을 사정

하고 획정방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재직 중 호봉 재획정 및 정정) ①교직원이 재직 중 학력변동(이하 “학력변동”은 전임 강사 이상에게 해당한다) 및 직위변동 등의 호봉 재획정 사유 발생 시 호봉을 재획정 하여야 하며 재획정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교직원이 추가경력 신청으로 인한 호봉 재획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7조(잔여기간의 특례) 교직원이 동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정기승급 및 특별승급) ①교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②교직원의 특별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③정기승급 및 특별승급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 또는 본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9조(승급의 제한 및 승급 기간의 특례) ①교직원의 승급제한은 아래와 같으며 승급 제한의 사유가 발생시 본인에게 즉시 통보한다.

1. 휴직 중에 계류중인 자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2. 징계처분,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3. 징계처분 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영창, 근신, 견책 : 6월

② 승급기간의 특례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정액급여

제10조(본봉) ①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②교직원에 대한 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교의 본봉은 일반직원의 봉급표 중 9급의 봉급액을 적용한다.(조개정 2010. 05. 04)

제11조(기말수당) 삭제 (개정 2006.1.17).

제12조(정근수당) 교직원에게는 호봉에 반영된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정근수당 가산금) 교직원에 대하여 호봉에 반영된 근속년수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가족수당) ①교직원으로서 4인 이내 가족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②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하여 기초조사 후 지급금액을 가감한다.

제15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2011.03.01.부분개정>

② <삭제> <2011.03.01 삭제>

제16조(기술업무 수당) 교직원 중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업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재정 형편에 따라 총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기술직종 중 도서직, 기타, 기술직에 분류되는 직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2. 일반직 중 전산직렬(9급 이상 자격증 없이 현업종사자 포함) 월 40,000원
3. 기능직(운전, 열관리, 전기, 기타 기사 중 해당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월 40,000원
4. 삭제(개정 2006.1.17)
5. 전문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소지자 월 300,000원(개정 2010.10.5.)

제17조(근속가봉 및 보전수당 등) 교원 중 공무원 보수규정상 근속가봉 수당에 해당되는 교원에 한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근속가봉수당 을 지급하고, 보전수당은 5년 이하인 교원(이하 “전임강사대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1(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보전수당)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라 교통보조비 지급액과 교통보조비의 기본금산입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교원에 대해 교원보전수당으로 차액을 지급한다. <2011.03.01 신설>

제18조(학술연구비, 사무추진비등) ①교원(조교를 포함한다)에게 매월 학술연구비를 지급하고 직원(이하 “일반직, 기능직”을 말한다.)에게는 사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추진비를 지급한다.

②지급기준, 절차 금액 등은 대학 예산형편에 따라 총장이 이사장의 자문을 얻어 별도로 지급지침을 정한다.

제19조(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등) ①보직(이하 직무대리기간을 포함한다)을 부여한 자에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에 대하여는 이사장의 자문을 얻어 총장이 별도로 지급지침을 정한다.(개정 2005.06.01)

1. 보직수당 지급 대상자

- 가.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총장, 부총장 등 이에 상당하는 보직
- 나. 정관 및 직제 규정상 하부조직 중 행정부서(처)과장, 부속시설의장, 기숙사 사감, 학과장, 예비군대대장, 팀장, 계장 등 이에 상당하는 보직

2. 정보비 (삭제)

3. 판공비 (삭제)

②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1. 지급 대상자

- 가.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총장, 부총장, 교원 중 행정부서의(실·처) 장, 부속시설의 장 (산업체 포함) 등 이에 상당하는 보직

- 나. 일반직 중 4급(별정직 중 4급 상당 포함)직위 이상자 등 이에 상당하는 보직
 2. 지급기준은 직원 직급 호봉 봉급액에 공무원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초과근무수당, 후생적 급여

제20조(조교, 및 일반직원의 시간외, 초과근무 등) ①교직원(전강 이상의 교원은 제외 한다)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당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을 준용 시간외, 야간, 휴일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예산상 조정의 사유가 발생 시 지급절차 기준액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 규정에 의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당직근무자(경비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실비 변상적인 수당으로 다음과 같이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1. 당직근무자 중 야간 자
2. 당직근무자 중 주간 자
3. 토요일 주간근무자

제22조(교원의 초과수당) 교원의 법정책임시수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와 기준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 대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2011.03.01 부분개정>

제24조(직급보조비) ①교직원(이하 “보직이 있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중 총장, 부총장, 행정(실, 처)과장, 일반직(이하 “일반직, 조교,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을 말한다)에게 공무원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단, 교원 중 부속시설의 장, 처장, 과장, 주간, 연구원, 일반직 중 5내지 6급 이하의 직원이 과장 (이하 “과장 대우”를 포함한다)으로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 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의1(명절휴가비 등) 교직원에게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부득이 조정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2011.03.01 부분개정>

제24조의2(학사지도비, 업무개발수당) ①교원(이하 “조교”를 포함한다.)에게는 학사지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사지도비를 직원에게는 업무개발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동조신설 2006.1.17 신설)

②동조의 지급기준, 절차 등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사장의 자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입시실비변상 수당) 교직원 중 입시업무에 종사한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자문을 얻어 입시실비변상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액 산정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입시주무 부서장이 관장한다.

제26조(감액지급) 교직원이 보수 감액 지급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별표2]에 의하여 보

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7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월정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수 중 교통비, 정액급식비등 지급일은 실정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보수의 지급방법은 교직원의 해당금융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 부분별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규정 외 사항발생시 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총장이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9조(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아래규정은 폐지한다.

①항에서 ⑥항['99. 8. 5 삭제']

⑦조교, 임시직 급여지급규정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지침[99. 8. 5신설]

제30조(경과조치)[99. 8. 5삭제]

제31조(보수자료조사) 총장은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지역별 전문대학의 보수체계, 공무원보수규정, 민간인 보수체계, 생계비 등 물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장 연봉제(99. 8. 5신설)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①연봉제의 구분은 재직중인자의 연봉과 신규 임용자의 연봉체계로 구분한다.

②적용대상은 대학의 교원("이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및 명예교수에 한한다."), 조교, 일반직원("이하 기술직, 별정직, 기능직원에 한 한다")에 적용한다.

제33조(재직중인자의 연봉책정) ①이 규정 개정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규정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9조, 제40조를 제외하고 동 규정에서 정하여 계산된 연액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②연봉책정 시 정기승급 교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호봉상승분을 가산하여 연봉으로 책정한다.

제34조(재직중인자 중 이 규정 적용 제외자) 이 규정 적용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계약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
3. 임시직원
4. 앞으로 계약직원으로 채용될 자

제35조(신규 임용자의 연봉책정) ①신규임용 교직원의 연봉 책정액은 대상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및 재직중인자의 연봉책정 등을 준용, 임용(이하 "연봉계약서"라 한다)계약서에 의하여 이사장이 책정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하 "총장 및 유치원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정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2000. 9. 1이후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책정하는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하고 임명 시 연봉계약서를 쌍방 체결한다.

③ 2000. 9. 1 이후 특별채용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는 1항의 여건을 고려하여 면접 후 쌍방 간 연봉계약서로 체결한다.

제36조(연봉계약의 체결) ① 교직원의 연봉체결 시기는 매년 1월 당해연도 정기승급을 기준으로 1월에서 2월 사이 체결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연봉계약 체결권자("이하 임명권이 있는 경영자를 말한다.")는 이사장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총장 및 유치원장을 제외한 법인산하 교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승진 시 연봉책정) 교직원이 연봉책정 기간에 승진하였을 경우 동 규정 제6조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 후 승진일자 이후부터 잔여연봉 체결기간까지 재산정하여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제38조(강임 시의 연봉보전 등) 강임된 교직원에 대한 연봉 보전은 강임 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직급의 연봉 최고액(한계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9조(연봉 책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① 교직원("이하 재직 중인 교직원 및 신규임용 교직원을 포함한다.")의 연봉책정시 제외되는 급여는 다음의 급여(제수당으로)로 한다.

1. 학비보조수당
2. 보직수당
3. 당직근무수당
4. (삭제)
5. 입시실비변상수당 등
6. 교원의 연구비중 연구비 과목에서 지급되는 연구비
7. 부정기적 초과근무수당(조교 야간초과 포함)
8. 가족수당

② 본 조 연봉산정에 불균형한 수당은 성격상 사유 발생에 따라 별도 봉급지급 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연봉의 지급을 위한 연봉배분 방법) 연봉총액 중 성과급 연봉 및 평정 등급에 따라 적용할 기본급은 제39조의 기타수당을 제외한 총액 중 100분의 80을 기본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연봉으로 구분하여 배분한다.

제41조(성과급 연봉의 지급 및 평가방법) ① 연봉제에 따른 성과급에 적용할 교직원 업적평가규정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단,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시기, 배분방법,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필히 이사장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연봉의 조정) ① 교직원의 연봉책정은 업적평가와 근무평정을 기초로 하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책정한다.

② 다만 기본연봉의 감액조정은 연봉의 감액사유가 발생 시에는 수시로 조정 할 수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하 "징계처분"에 의하여 감액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과급 상여에 반영한 평정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전년도의 기본 연봉액의

하향조정은 할 수 없다.

③호봉승급액은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일정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교원의 업적평가와 직원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해당기간의 호봉 승급액은 당해연도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2009.04.01개정)

제43조(기본연봉의 지급방법)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이하 “연봉/12월”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단 중도 입사자 및 사유발생 자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일 이후 연봉액을 계산하되 회계연도 말까지 계약한다.

제44조(신분 변동자의 기본연봉 등의 계산) 연봉제 대상 교직원 중 재직 중 신분변동 (“이하 ,전직, 전보, 징계처분, 휴직기간, 면직, 해임, 직위해제 등 모든 변동을 말한다.”) 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 및 지급은 별표 2]에 의하여 제한 및 감액한다.

제45조(중도 입사자 및 중도 퇴직자의 성과급연봉 지급) 입사자의 성과급 연봉은 8월 31일 이전입사자인 경우는 환산된 성과급연봉의 50%를 감하여 지급하고 9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연봉제 시행과 교직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 적용)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연금법 및 건강보험법에 대한 적용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한다

제47조(기타 세부사항) 교원 및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89.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0. 03.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0. 09.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3. 03. 0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규정 제5조 및 제6조는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 중 조교, 임시직을 제외한 사무직, 기능직(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중 85. 12. 31. 이후 임용된 자에 한하여 이 규정 개정시행과 동시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 중 경과조치) 종전규정 중 연봉제와 관련된 조문을 제외한 제조문은 연봉제 신규임용자의 적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직에서 비계약직 교원으로 변동자의 연구보조비 환산) 1999. 9. 1자 비계약직으로 변동된 교원은 현직급의 분기별 연구보조비 2회분만 합산하여 연봉에 산입하고 2000. 3. 1자 비계약직으로 변동된 교원은 지급치 아니한다.

제4조(계약사무처리 지침 작성등 위임)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계약업무 처리지침은 소속기관의 장("이하 총장 및 유치원장을 말한다.")에 위임하여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직원의 보수는 2001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 중인 자에 대한 호봉 재획정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전 재직 중인 자에 대한 호봉 재획정은 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③(교직원에 대한 연봉제 적용) 2002년 3월 1일 이후부터 교직원에 대한 연봉제는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를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청운학원에서 별도의 시행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적용을 유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 ②(계약직원의 준용) 재직 중인 계약직원 및 신규로 입사하는 계약직원의 봉급 책정은 본 규정을 준용하여 쌍방 합의하에 가,감하여 별도로 책정한다.
- ③(비정년 계약교원의 봉급책정) 계약교원으로 채용하는 계약교원의 봉급 책정은 최고 13호봉 내지 15호봉을 초과 할 수 없으며 13호봉 내지 15호봉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주무부서장이 쌍방 조정 합의하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비정년 계약교원 및 계약직원의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전 임용된 비정년 계약교원 및 계약직원은 이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2009년 연봉중 3월분의 급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는 2010년 3월 1일 연봉책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교직원 호봉획정시 유사경력환산표

[별표 1]

직 류 별	내 용		환산율 (%)	비 고
교 원	공 무 원 교 원 경 력	.사병경력 포함한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음	공무원보수 규정준용	
	사립학교 경 력	.정규직 경력 .임시직 경력	100% 80%	
	유 사 기 타 경 력	.공무원과 같음	공무원보수 규정준용	
일반직원 (행정, 기술,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조 교 이에 유사 한 직종)	공 무 원 교 원 경 력	.사병경력 포함한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음	공무원보수 규정준용	
	사립학교 경 력	.정규직 경력 .임시직 경력	100% 80%	
	유 사 기 타 경 력	.공무원과 같음	공무원보수 규정준용	
	특 수 경 력	.법인체 또는 각종회사에서 임용직종 과 상응하는 경력 .각종 조합 또는 병의원에서 임용직종 과 상응하는 경력	40 % 30 %	
(비 고) 위 표 외의 경력 중 법무사무실, 세무사무실, 감정사무실, 공증인사무소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이나 법인에서 채용될 직무와 유사한 직에 재직하였거나,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일 경우는 10%-100%의 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단, 환산경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직원 보수감액 지급 기준표

[별표2]

구 분	지 급 요 령					
정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징계규정에 의하여 감액하고 그 이외에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준용 					
직위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제44조 적용 					
임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면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미만 근무자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2년 이상 근무자가 2일 이후 퇴직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정년퇴직, 당연면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년퇴직자 중 2일 이후 퇴직자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당연퇴직자 중 금고이상의 형으로 면직자 : 1할계산지급 ·당연퇴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이 없고 2년이상 근속자가 2일이후 면직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직권면직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신규, 승진, 승급, 강임 등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결 근	<p>결근일수가 당해 교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일수를 보수 (제 수당 포함)의 1할 계산 감액</p>					
연수, 파견 (1년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국내</td><td>보수전액 지급</td></tr> <tr> <td>국외</td><td>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td></tr> </table>		국내	보수전액 지급	국외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국내	보수전액 지급					
국외	교직원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적용					
휴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휴직 : 정관 제43조 제1항 적용 ○ 공무상 질병휴직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정관 제40조 제1항 2호, 4호, 6호, 8호에 의한 휴직 : 정관 제43조 제2항 적용 ○ 국외학위취득목적 또는 연구목적차 휴직 : 본봉 (제수당 제외)의 50% 지급 ○ 정관 제40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휴직하는 자 : 공무원보수규정상 해당직급 봉급액("이하 공무원봉급표의 기본급을 말한다")을 지급. ○ 유아휴직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간병휴직 : 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기타휴직 : 정관 제40조에 의함 					
면직, 징계 처분 등이 취소된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급금액을 가감하여 차액분 소급 지급 					
기타 감액지급 사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추가경력 산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2항 관련)